# 1964년 민권법
# 제VI편에 의한
# 여러분의 권리

1964년 민권법 제VI편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인종, 피부색 또는 출신국에 근거하여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제외시키거나, 혜택의 제공을 거부하거나, 또는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. 대통령 행정명령 제12898호는 소수민족과 저소득층에 대한 환경 정의를 강화합니다. 대통령 행정명령 제13166호는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합니다.

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고속전철지구 민권실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연방법 및 주법은 가장 최근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백팔십(180) 역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할 것을 요구합니다.

BART의 차별금지 의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거나, 또는 제VI편에 의한 불만을 제기하려면 다음의 주소로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.

**San Francisco Bay Area Rapid Transit District (BART)**
**ATTN: Office of Civil Rights**
**300 Lakeside, Suite 1800**
**Oakland, CA 94612**
**(510)874-7333 팩스 (510) 464-7587**
**officeofcivilrights@bart.gov**

불만 제기 양식은 BART 웹사이트에서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.
**www.bart.gov/titlevi**

**제VI편은 법률입니다.**

BART

09/12/24 개정